

# 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연구비상 규정

2014.01.20. 제정  
2017.05 개정  
2019.06 개정  
2021.01 개정

## 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임상종양학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비 보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명칭)

본 연구비의 명칭은 "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연구비상"이라고 한다.

## 제3조 (지급분야)

본 연구과제는 임상종양학 분야의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.

## 제4조 (추천구비서류)

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하는 날까지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신청서 1통 (소정양식)
- ② 이력서 1통
- ③ 사진(명함판) 2매
- ④ 3년간의 연구업적, 계획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(저서 및 논문 등의 목록 2부)

## 제5조 (연구과제 심사)

연구과제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하여 선정 후,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

## 제6조 (연구비 지급 세부 내역)

본 연구비는 대한종양내과학회 정기심포지엄 석상에서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하며 인원은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한다.

## 제7조 (연구비 수혜자의 의무)

- ① 연구결과는 다음 해 정기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, 3년 이내에 대한종양내과학회 학회지 또는 SCI, SCIE 등재지에 대한종양내과학회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밝혀서 게재하여야 함
- ② 연구 결과물 내용이 수정/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
- ③ 연구 결과물이 게재된 학술지, 학회지, 교내 연구지 등은 3부 이상 학회에 제출
- ④ 대한종양내과학회 지원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함  
" 동 연구는 대한종양내과학회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"  
" The research has been supported by Kore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"

제8조 (연구비 환수)

제4조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제7조 연구비 수혜자 의무를 위배할 경우 연구비 전액을 환수 한다.

제9조 (심사료 지급)

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.

부칙

- ①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나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따로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- ② 본 규정은 대한중양내과학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